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24일, 김교홍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4. 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교홍의원)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임.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위식 자치구명으로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성·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의 인천광역시 중구·동구·서구 등 행정체제를 개편하여 2026. 7. 1.부터 새로운 자치구(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서구 분구(分區))를 출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하여 북부는 검단구로, 남부는 서구로 분리되게 됨.

제정안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종전의 방위식 자치구명¹⁾인 중구·동구가 제물포구·영종구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에서 유일하게 방

1) 참고로, 2026. 7. 1. 이후 방위식 자치구명을 사용하는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서구·동구·남구·북구,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 인천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가 있음.

위식 자치구명으로 남게되는 “서구(西區)”의 고유성·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서해구(西海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명칭변경의 적절성·필요성 여부, 절차적 타당성, 명칭변경에 따른 재원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명칭변경의 적절성·필요성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실무편람」(행정안전부)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의 판단요건(검토기준)으로 ①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②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③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서쪽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어 지리적 위치와 실제 행정구역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²⁾, 방위식 지명으로 인해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역사성을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인천광역시 남구(南區)의 경우 지리적 위치와 방위식 지명의 불일치 해소 및 지역의 역사성 및 정체성 반영 등의 사유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2018.3.20.)을 거쳐, 2018년 7월 1일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6. 7. 1.부터 기존의 방위식 지명을 사용하던 중구·동구 또한

2) 참고로, 인천광역시 서구는 1988년 북구(현 계양구와 부평구)에서 분리되어 설치되었고, 1989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종구 지역(중전 용진군 영종면·용유면)이 인천광역시 중구로 편입되었음

제물포구·영종구로 변경되는데, 이에 맞추어 서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명칭 정비의 일관성 및 시기적 정합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둘째, 명칭변경의 절차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바꿀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³⁾,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2025. 8. 14.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는 2025. 9. 9.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부대의견⁴⁾을 제시하여 의결⁵⁾하여 명칭변

3)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조(관계 지방의회)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계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한다.

4) 「서해구」 명칭은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명칭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부족과 준비과정 미흡 등의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타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명칭에 반대하거나 비우호적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서해 연안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함

5) 참고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심사보고서에서는 변경하려는 명칭인 ‘서해구’는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면서도 인천의 서해안 도시로서의 상징성과 해양 도시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바다 명칭을 자치단체 명칭에 활용한 사례(동해시, 남해군)가 있다는 점에서 ‘서해’라는 명칭 사용에 제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천뿐 아니라 경기·충남·전북·전남 지역이 모두 서해안에 접하고 있고, 용진군과 신안군 또한 서해상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행정 및 관광·홍보, 교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해 전반과 혼재되어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칭 변경시 해당 기관에서는 서해 연안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고유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경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

셋째, 명칭변경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는 약 4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해당 비용은 보조금(시비)과 자체수입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임.

다만,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기존에 축적해 둔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서구)이 데이터의 연속성 및 활용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지역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 국회에서 관련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인천광역시 “서구(西區)”를 “서해구(西海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서해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